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자 선발 계획

1. 근거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

나. 중원대학교 학칙 제8조 제3항, 제13조, 제21조, 제3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80조

다. 중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6조, 제52조 제3항, 제104조 제5항, 제113조 제3항, 제117조 제4항

2.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가. 재입학 대상

1)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자퇴자 포함)
   - 2017. 4. 1일 이전 제적자

2) 단,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학부, 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제적 후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일 이내로 1년 이상 경과자)

나. 재입학 제외대상

1) 학칙 제21조 제3항 : 징계에 의한 제적자(다만,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락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있음.)

2) 학칙 제30조 제6호 :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3. 재입학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 및 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나. 재학연한

1) 재입학 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2)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이전 등록(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 학기 수와 재입학 이후 이수할 학기 수를 합하여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연한 초과자는 학칙 제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학적을 상실 함.

4. 재입학 여석 산정 및 선발기준

가. 재입학 여석 산정**(정원 내 · 외 구분)**

1) 2016학년도 1~4학년 제적자(4. 1, 10. 1 기준) 총수에서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편입학 모집 인원 및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인원을 제외한 잔여 여석

※ 2016. 4. 1 기준 : 2015. 10. 1 ~ 2016. 3. 31 까지의 제적자 수

※ 2016. 10. 1 기준 : 2016. 4. 1 ~ 2016. 9. 30 까지의 제적자 수

2) 의료인 양성학과(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모집단위별 결원 발생시 충원 가능

▣여석산정 방법(의료인 양성학과 제외)▣

1학기 : 직전학년도(4.1, 10.1 기준)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연도 일반편입학(예정) 모집인원

2학기 : 직전학년도(4.1, 10.1 기준) 1~4학년 제적자 수 - (당해연도 일반편입학생수+1학기 재입학생 수)

나. 재입학 선발기준

1)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동일 학년 이하에 선발

2) 재입학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발기준

가) 제적 전 총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나) 취득학점이 많은 자

다) 이수과목수가 많은 자

5. 재입학 허가 학년 · 학기 기준

가. 제적 전 총 취득 학점을 아래 기준표를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 학기를 허가한다. 다만, 교양과목 이수 상한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제외한다.

나. 교양과목 이수 상한학점의 기준은 재입학 예정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교양과목 영역별 최저이수학점 배분표상의 교양과목 이수 상한학점에 따른다.

6. 재입학 학년 학기 허가 기준표

구분	졸 업 기준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14학번 이전	140학점	17이하	18이상	35이상	53이상	70이상	88이상	105이상	123이상
	수료학점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2015학번 이후	130학점	15이하	16이상	32이상	48이상	65이상	81이상	97이상	113이상
	수료학점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7. 재입학 신청서류

가. 재입학 원서 1부(별첨1)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서약서 1부(별첨2)

라. 학과장/학(부)장 의견서 1부(별첨3)

마. 재입학자 이수학기 포기원(별첨4) : 해당자만 작성

8. 재입학 접수절차

가. 성적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홈페이지), 주민센터 민원 24시 또는 증명서 발급기 본교 S 203호 원스탑 서비스센터

나. 재입학원서 작성 : 홈페이지 재입학 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 소속 학과장/학장 날인 : 제적 전 소속학과에서 재입학원서에 학과장/학장 날인 받음

라. 재입학원서 제출 :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학사운영팀에 제출
(학기포기 신청자는 학기 포기원 추가제출)

9. 재입학 일정

가. 접 수 기 간 : 2017. 7. 3(월) ~ 7. 7(금)

나. 합격자 발표 : 2017. 7. 19(수) 예정

다. 수 강 신 청 : 2017. 8. 17(목) ~ 8. 23(수)

라. 등 록 기 간 : 2017. 8. 22(화) ~ 8. 31(목)

마. 재입학 일자 : 2017. 9. 1(금)

10. 재입학자 학점 이수 등에 관한 적용 사항

가. 제적 전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재입학 후의 졸업 소요 학점에 통산하여 인정

나. 학부로 입학하여 제적 당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 내에 전공을 선택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나, 전공 결정 후 제적된 자는 소속 전공으로 재입학

다. 재입학생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적용

라. 이미 이수한 학기를 포기하고(학기포기원 별도 작성) 재입학 학년을 조정하여 재입학 가능

마. 재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고, 재입학 승인된 학기에 전과할 수 없음

바. 제적 전 학사경고자라도 2014학번 이전 재입학자는 15학점 ~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

다만, 2015학번 이후 재입학자는 12학점 ~ 18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5학점까지 본인이 수강신청 가능하며, 15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 교무학사지원팀에 방문)

사. 재입학생은 학점이월 대상이 아님

아. 재입학 취소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u>미납시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u>

11. 기타 문의 사항

가. 재입학 관련 문의 : 교무학사지원팀 Tel) 043-830-8094

나. 생활관 입사 : 남자 생활관 Tel) 043-830-8253~7

여자 생활관 Tel) 043-830-8242, 5, 6, 7

다. 등록금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Tel) 043-830-8274